

2022년 도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제6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7. 26.(화), 14:00 ~ 17: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1층)
- ▣ 출석위원 : 장석하(위원장), 남효대, 남해경, 위광철, 이상석, 조인숙,
최종덕, 진혜영 (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고지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 의결방식 및 회의록 공개

1. 법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사적)」 출입시설 누수 보수정비 | |
| 2 | 「사직단(사적)」 유문(홍살문) 복원 | |
| 3 | 「인천 계양산성(사적)」 발굴지 정비 | |
| | | |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복원 2022-6차-001)

1.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출입시설 누수 보수정비

가. 제안사항

-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출입시설 누수방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최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령왕릉, 5호분, 6호분의 출입시설을 중심으로 누수가 관찰되고 있어 누수 방지를 위한 보강조치를 하고자 함.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5차 복원정비분과 회의('22. 6. 28.) : 보류
: 무령왕릉 내부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원인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 후 재검토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공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사적
 -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5-2 일원
 - 지 정 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무령왕릉과 왕릉원 출입시설 누수 보수정비
 - 사업예산 : 3억원
 - 공사내용 : 무령왕릉, 5호분, 6호분 출입시설 부분 누수방지층 보강
 - 무령왕릉, 5호분, 6호분 누수방지층은 강회다짐층 위에 진흙다짐층으로 구성되어 거의 누수가 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이나, 근래에 새로이 축조된 출입시설 부분은 강회다짐층만으로 시공되어 있어, 진흙다짐층을 추가 시공하고자 함.

라. 관계전문가 의견('22. 7. 14. 현지조사) / 복원정비분과 위원 000·000·000

- 현지조사 회의에서 제시된 설명자료를 통해 왕릉 출입시설 바닥의 물은 '누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됨.
- 구조적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금회 설계에서 제시한 강회층 위 진흙다짐층 시공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마. 검토의견(백제왕도추진단)

- 현재 보수정비 계획안은 기존 보수정비 이력 및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해 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근래에 개설된 출입시설 부분만의 보수안으로 소규모의 절토와 보강만으로 누수방지 조치를 하여 고분환경을 양호하게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면밀히 검토 받아 추진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누수 및 구조적인 부분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다만 봉분 상부 침수구역 및 5호분 인방재 구조 보강 등은 보수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2. 사직단 유문(홍살문) 복원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사직단」 내 유문(홍살문) 복원에 대한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로부터 관리이관 된 이후 정비되지 않은 사직단 유문(홍살문)을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원형고증 및 복원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궁능유적본부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직단(사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 지 정 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사직단 유문(홍살문) 8개소 원형고증 및 복원정비(문화재청 직접 시공)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2.3.7. 000(문화재위원) >

- 복원시점은 자료가 가장 많은 대한제국기 이전 조선후기로 하고 일제강점기 사진은 참고자료로 함이 타당함.
- 유문은 「사직서의궐」와 「사직단국왕친향병풍」과 같이 기둥이 굽고 뿔목이 없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둥높이는 사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
- 신문과 홍살문은 「사직단국왕친향병풍」의 모습이 타당하고 지붕은 경사가 있는 판지붕일 가능성에 대해 추가 고증이 필요함. 판문은 상부에 홍살이 있는 우리판문이 타당함.
- 하부에 가새가 있을 가능성은 지대석 등의 축구멍 흔적과 연관하여 좀 더 고증 후 복원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6월 000(문화재위원) >

- 사직단 전체의 복원의 기준연대는 20C 초반으로 설정되었음.
- 유문, 홍살문 관련 고증자료(문헌사료, 도설, 사진) 중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사진은 1894~1897년 버드 비숍사진과 1909년 세키노 다다시 사진임.
- 1890년대 유문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1911년 사직제 폐지 이전 왕실에 의한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 유문, 홍살문은 형태 복원이 비교적 중요하므로 사진 상 문의 형태, 규모, 비례, 구조 등의 규명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한 1909년 사진을 복원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복원정비과)

- 전문가 자문 및 고증조사 결과를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 받아 추진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3. 인천 계양산성 발굴지 정비

가. 제안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인천 계양산성」 발굴지 정비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 계양산성 제10차 발굴조사(2019~2020)에 따라 발굴 구간을 포함한 복문지 ~ 북서쪽 치성(2개소) 구간의 성벽 정비와 배수로 설치를 시행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계양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인천 계양산성(사적)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
 - 지 정 일 : 2020. 5. 2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인천 계양산성 발굴지 정비
 - 공사예정금액 : 778,000천원 / 공사기간 : 180일
 - 사업지침 : 발굴조사 지역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굴지를 정비한다.(정비의 전과정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제출한다.)
 - 사업내용
 - 제10차 발굴 구간 좌우측 성벽 보수(L=46.8m)
 - 성벽 내탁부 토사 배수로 설치(L=80m)

라. 관계전문가 의견

<2021. 2. 3. / 000>

- 성곽 보수 정비는 발굴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되 보수 높이는 기존에 보수한 성벽 높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가급적 보수공사 후의 안전과 경관상의 어울림을 고려하여 시행할 것
- 보수 성벽의 시공은 최대한 기존의 성돌을 수습하여 재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면석의 경우 신재만으로 시공할 경우 고성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현장의 구재를 최대한 사용하고 반입하는 신재의 경우도 최대한 기존 성돌과 어울릴 수 있는 색상과 재질을 가진 것으로 엄선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 성벽 기저부가 훼손된 곳을 제외하고는 성벽 기저부를 굴착하지 않고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 상부에 보수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현재 안정화된 성벽 기저부 및 경사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 시공구간은 우수가 모이는 지점이므로 반드시 배수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성벽 내측으로 배수로를 개설할 경우는 우수가 성벽 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외부 탐방로는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설치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급경사지의 경우는 성벽과 충분한 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함.

<2021. 2. 3. / 000>

- 금회 정비구간은 북문지~2치성 구간(10차 발굴 완료지역)으로 하도록 함.
- 성곽 외벽 정비는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하도록 하며 보수 높이는 성곽 속채움석이 안전한 경사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까지 정비하여 성벽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함.
- 성돌은 주변에 흐트러진 기존의 성돌을 최대한 수습하여 재사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성돌은 외부에서 반입하되 기존의 성돌과 색상, 재질, 규격이 최대한 유사한 석재를 선정, 반입하도록 함.
- 외부 성벽의 경사가 급하고 일정높이까지 매립되어 있으므로 금회 정비 시 안정된 성벽하부까지 노출하지 않도록 함.
- 외부 탐방로는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형을 손상시키지 않고 야자 매트를 설치하도록 함.

마. 현지조사 의견

<2022. 7. 13. / 000, 000 복원정비분과 위원>

- 금회 사업은 기 시행된 성벽정비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전 단면 조사와 해체과정에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간 10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축조기술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듬어진 석재를 사용하여 외성벽 기저부에서 보축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계도서는 보완되어야 함.
- 따라서 사업구간에 대한 현황측량 및 실측을 통해 성벽 정비에 관한 사항은 기 발굴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축조기술과 그 기법을 표현함에 있어 설계시방서와 도면으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면석의 세장비를 1:1.5~1:3으로 밝히고 있으나 표본성곽(2곳 이상)의 입면도(1.5m*1.5m)를 작성하여 면석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등 기초자료로 제공
 - 현지반선 이하와 보축 상단까지는 구조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한 구간은 해체 범위 조정 등
 - 기존 외벽의 면석은 한층 한층 횡방향으로 바른층 쌓기를 참고(品자형)
 - 성벽은 입지한 위치의 지형변화 등으로 외벽기울기(75~80° 내외)가 서로 다르므로 변화 구간은 가능 범위 내 설계도서에 표기 등
- * 설계자는 기 발굴조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함.

바.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본 사업은 2019년 완료된 2개의 북서쪽 치성부터 북문지 사이의 성벽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연속성에 따라 원형 및 보수 구간을 고려하여 보수하여야 함.
 - 해체 범위, 성벽높이, 보축부 및 내벽 처리, 입·단면 형상 등
 - 치·성벽 정비(2019 수리보고서 참조)는 치성 보축 기저부 부분 보수 후 성토 마감, 일부 잔존 내벽 정비, 성돌 현장 채집하여 조성
- 성벽은 상부에 무너진 구간이 많아 하부 성벽 현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해체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성벽 상단 비늘 마감의 경사각은 기존 상단 지형 및 기 조성된 치성 구간의 자연스러운 상단 마감 경사를 고려하여 안전각을 유지하되 지형별로 자연스럽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토사 배수로의 말단부는 현재 북문지 주변의 성 내부에 배출되게 되어 있어 최종적인 배수 처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성벽의 보축은 현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발굴구간 외에도 지반 하부에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안정한 성벽의 하단부 해체 시에는 보축의 유무 및 상태를 확인토록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함.
-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성벽 외곽의 동선 조성(향후 계획)은 성벽에 대한 관람객 안전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치·성벽 정비 시, 당초 동선 구성(야자매트)이 계획되었으나 변경 시 제외된 것으로 보임).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리과 검토의견과 성상로 마감, 뒤채움부 층단 해체·쌓기 안전성, 배수체계, 내탁부 유구 일부 노출 등 도면 보완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